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  | 행   | 개   | 정 (안)   |
|---|---|---|---|
| 제3조(기능) ① “생략”  | 제3조(기능) ① “생략”  | 제3조(기능) ① “현행과 같음”  | 제3조(기능) ① “현행과 같음”  |
|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·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                  | ② 위원회는 마포구청장이 결정·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                  | ② “현행과 같음”  | ② “현행과 같음”  |
| 1. 교통요금   | 1. 교통요금   | 1. “현행과 같음”   | 1. “현행과 같음”   |
| 2. 도시가스요금   | 2. 도시가스요금   | “삭 제”   | “삭 제”   |
| 3. 체육시설 사용료   | 3. 체육시설 사용료   | 2. 체육시설 사용료   | 2. 체육시설 사용료   |
| 4.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  | 4.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  | “삭 제”   | “삭 제”   |
| 5. 주차요금   | 5. 주차요금   | “삭 제”   | “삭 제”   |
| 6.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  | 6.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  | 3.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 | 3.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 |
| 7.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 | 7.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 | 4.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 | 4.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·사용료 |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'94. 9. 9.  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4. 8. 24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'94. 8. 24.
- 다. 상정일자 : 제24회임시회 제1차위원회('94. 9. 9.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재복 의약과장)

가. 제안이유

보건소 등록치료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사본을 진료상 필요에 의거 다른 진료기관에서 요구할 때와 환자 본인이 건강관리등 필요에 의거 요구한 경우에 방사선필름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교부함에 따른 보건소수가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에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 신설(안 제2조제2항 제6호)
- 방사선필름(규격 : 14×14인치)사본 교부수수료 1매당 3,000원 규정 신설(별표 제6호)

**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**

- 가. 동 조례안은 제2조제2항에 “6.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”란 및 별표 수수료액 중 “6.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”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.
- 나. 이는 1994. 1. 7. 법률 제4732호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한 개정으로, 그 내용을 보면  
 “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입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였음.
- 다. 동 조례안은 구민의료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정으로 특이사항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

- 질의(송운석 위원) : 개정의료법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지난 제23회 마포구의회(임시회)에 조례(안)을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?
- 답변(김재복 의약과장) : 복사기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- 질의(정연우 위원) : 이 조례 시행전에 방사선필름사본 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?
- 답변(김영호 보건소장) : 방사선필름을 빌려주어 병원에서 확인한 후 반납하도록 하면 됩니다.
- 질의(정연우 위원) : 이 조례 시행전에 방사선필름을 빌려주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?
- 답변(김재복 의약과장) : 방사선필름을 복사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로는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외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25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4. 8. 2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**1. 개정이유**

보건소 등록치료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사본을 진료상 필요에 의거 다른 진료기관에서 요구할 때와 환자 본인이 건강관리등 필요에 의거 요구한 경우에 방사선필름 사본을 교부할 수 있게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교부함에 따른 보건소수가정수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에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 신설(안 제2조제2항제6호)
- 방사선필름(규격: 14×14인치)사본교부 수수료 1매당 3,000원 규정신설(별표 제6호)

3. 개정근거

- 의료법(1994. 1. 7. 법률 제4732호) 제20조제2항
- 보건소법(1991. 3. 8. 법률 제4355호) 제8조제1항 및 제2항
- 지방자치법(1994. 3. 16. 법률 제4741호) 제15조

4. 개정조례(안): 별첨

5. 예산조치 필요성: 예산조치완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  
(별표) 수수료액표중 5. 검사란 다음에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 교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종 목       | 단 위             | 금 액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
| 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 | 방사선필름사본교부 | 1매<br>(14×14인치) | 3,000원 |     |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 | 행 | 개 정 안   |
|--|---|---|
| 제 2 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(생략)<br>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 표와 같이 징수한다.<br>1.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, 제증명<br>2.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<br>3. 항 결핵제 보급<br>4. 유료접종 |   | 제 2 조(수수료 및 진료비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(현행과 같음)<br>3. (현행과 같음)<br>4. (현행과 같음) |

| 현행  | 개정안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--|--|--|--|------|--|--|--|--|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|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5. 검사<br>(신설)<br>③ (생략)<br><br>(별표)<br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수료액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목</th> <th>단위</th> <th>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>1~5 (생략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         | 종목            | 단위     | 금액 | 비고 | 1~5 (생략) |  |  |  |  | (신설) |  |  |  |  | 5. (현행과 같음)<br>6. 환자에 관한 의료기록사본<br>③ (현행과 같음)<br><br>(별표)<br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수수료액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종목</th> <th>단위</th> <th>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colspan="5">1~5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</td> <td>방사선 필름사본 교부</td> <td>1매 (14×14 인치)</td> <td>3,000원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종목 | 단위 | 금액 | 비고 | 1~5(현행과 같음) |  |  |  |  | 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 | 방사선 필름사본 교부 | 1매 (14×14 인치) | 3,000원 |  |
| 구분  | 종목          | 단위            | 금액     | 비고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| 1~5 (생략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| (신설)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| 구분  | 종목          | 단위            | 금액     | 비고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| 1~5(현행과 같음)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| 6. 환자에 관한 의료 기록사본 교부  | 방사선 필름사본 교부 | 1매 (14×14 인치) | 3,000원 |    |    |          |  |  |  |  |      |  |  |  |  |  |    |    |    |    |    |             |  |  |  |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|

'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1994. 9. 13.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4. 8. 31.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4. 9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24회임시회 제2차위원회(94. 9. 12.)상정, 질의토론  
제3차위원회(94. 9. 13.)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최영명)

- 가. 제출이유
  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4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  - 2) 매각-5필지

| 소재지        | 지목 | 지적(㎡) | 매각시기 | 매각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아현동 570-68 | 대  | 18    | 하반기  |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 |
| 합정동 457-4  | 대  | 5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" 457-6    | 대  | 6 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" 457-19   | 대  | 22    | "    | "                     |
| 공덕동 253-19 | 대  | 198.3 | "    | " 제95조 제2항 제20호       |